# 사규관리규정

제정 1993.09.15 개정 1996.03.19 개정 2012.07.03 개정 1994.01.17 개정 1997.06.12 개정 2013.08.09 개정 1999.03.12 개정 2014.04.15 개정 2003.02.04 개정 2014.12.01 개정 2007.03.23 개정 2021.05.14 [전략기획처 경영협력부 042-600-8154]

### 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한국가스기술공사(이하 회사라 한다) 사규의 제정·개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규의 적정한 관리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사규의 제정·개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3조(제정원칙) ① 사규는 회사의 설립목적과 경영목표가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구현될 수 있 도록 제정되어야 한다.

② 회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제 기준과 절차는 이 규정에 따라 사규로 정하여 업무집행의 적정화 및 통일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4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사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되는 체계적 규범문서로서 규정·세칙 및 요령을 말한다.
- 2. 규정이라 함은 회사의 기본조직, 직원의 권리·의무 및 업무의 관리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과 기준 등을 정한 것으로서 회사규범의 근간이 되는 것을 말한다. 다만,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정된 사규는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규정으로 본다.<개정 2003.02.04>
- 3. 세칙이라 함은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한 것을 말한다.
- 4. 요령이라 함은 규정 및 세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이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 등을 정하거나 업무처리에 필요한 실무처리 방법과 절차를 정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광범위하여 전 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.<개정 2003.02.04>
- 5. 사규관리부서장이라 함은 사규의 체계와 형식을 통일하고 내용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
- 여 직제규정이 정하는 업무분장에 따라 사규의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.
- 6. 사규운용부서장이라 함은 직제규정이 정하는 업무분장에 따라 분장된 업무의 집행을 위하여 사규를 직접 적용하고 운용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.
- 7. 공개라 함은 사규를 국민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게시하는 것을 말한다.<신설 2012.07.03>
- 8. 입안예고라 함은 사규를 제·개정하고자 할 때에 미리 사규안에 대한 타부서의 의견을 수

렴하기 위하여 내부 인트라넷에 게시하는 것을 말한다.<신설 2013.08.09>

9. 사규 제·개정 예고라 함은 사규를 제·개정하고자 할 때에 미리 사규안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게시하는 것을 말한다.< 신설 2013.08.09>

### 제 2 장 사규의 체계 및 형식

제5조(분류) 사규는 다음과 같이 기능별로 분류·편성한다.

제1편 경영관리

제2편 조직관리

제3편 일반관리

제4편 인사관리

제5편 노무관리

제6편 재무관리

제7편 사업관리

제8편 기술관리

제6조(명칭) 사규에는 내용을 적절하고 간명하게 표현할 수 있는 명칭을 붙인다.

- **제7조(편성)** ① 사규는 총칙, 본칙, 부칙의 요소가 갖추어져야 한다. 다만, 본칙의 표시는 하지 아니하며 사규의 내용이 간단할 때에는 총칙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.<개정 2003.02.04>
  - ② 사규의 항목구분을 장·절·조·항·호의 순으로 하고 장·절·조에 대하여는 일련번호와 규정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한 표제를 붙인다. 다만, 사규의 내용이 간단할 때에는 장·절을 두 지 아니할 수 있다.
  - ③ 부칙에 조항을 둘 경우에는 부칙의 표시 다음에 총칙·본칙과는 별도의 일련번호를 붙인다.
- **제8조(배열)** ① 사규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총칙, 본칙, 보칙의 순으로 배열함을 원칙으로 한다.<개정 2003.02.04>
  - 1. 총칙에는 사규의 제정목적, 적용범위, 용어의 정의 및 해석의 지침 등 사규 전반에 공통되는 기본적 사항에 관한 조항 등을 배열한다.<개정 2003.02.04>
  - 2. 본칙에는 사물의 흐름이나 사고하는 순서 및 중요도에 따른 순서 등에 의하여 조항을 배열한다.<개정 2003.02.04>
  - 3. 보칙에는 문서의 처리, 벌칙, 하위사규에의 위임 기타 본칙 적용상의 특례조항 등을 배열한다.<개정 2003.02.04>
  - ② 부칙은 시행일, 현행사규의 개폐, 경과조치, 유효기간, 임시적 조항 기타 부수적 조항 등의 순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.

#### 제9조(작성형식) ① ( 삭 제 )<개정 2003.02.04>

② 조에는 장·절의 구분에 관계없이 제1조로부터 시작하는 일련번호를 붙여야 하며, 조의 표 제는 일련번호 다음의 ( ) 안에 기재한다.

- ③ 항에는 ①, ②, ③,···의 일련번호를 붙이며, 제1항은 조의 표제 다음에 계속하여 기재한다.
- ④ 호에는 1., 2., 3.,···의 일련번호를 붙이며, 항과 줄을 바꾸어 기재한다.
- ⑤ 부칙은 5개항 이내일 때에는 항으로 표시하고, 이를 초과할 때에는 조로 표기한다.
- ⑥ 보기 및 서식 등의 별표는 부칙 다음에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제10조(표기) ① 사규의 표기는 한글 가로쓰기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사규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래어나 상용한자를 ( ) 안에 표기할 수 있다.
  - ② 사규에서 사용하는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원칙으로 하며, 도량형 단위는 미터법으로 표기하다.
  - ③ 기간의 계산은 민법 제155조 내지 제161조에 규정된 바에 따른다.

### 제3장 사규심의위원회

**제11조** ( 삭 제 )<개정 1999.03.12.>

제12조 ( 삭 제 )<개정 1999.03.12.>

제13조 ( 삭 제 )<개정 1999.03.12.>

**제14조** ( 삭 제 )<개정 1999.03.12.>

제15조 ( 삭 제 )<개정 1999.03.12.>

제16조 ( 삭 제 )<개정 1999.03.12.>

제17조 ( 삭 제 )<개정 1999.03.12.>

## 제 4 장 사규의 제정 및 개폐

- 제18조(사규의 제정 및 개폐절차) ① 사규를 제정·개폐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.
  - 1. 사규운용부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사규 부패유발요인을 분석·평가하기 위하여 별지서식 제4호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및 부패영향평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감사담당부서에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하고, 해당사규가 방만경영 사전영향평가 대상인 경우에는 별지서식 제6호 평가 의뢰서를 작성하여 감사실 및 방만경영 사전영향평가 담당부서에 평가를 요청한다.
  - <개정 2021.05.14>>>
  - 2. 1호의 평가절차와 입안예고(제·개정 예고 대상 사규의 경우 입안예고와 동시에 사규 제·개정 예고 실시)를 거쳐 별지서식 제 1호의 사규 개정(제정·폐지) 주요내용, 별지서식 제2호 신·구조문 대비표, 제·개정 사규안 전문 및 입안예고를 통하여 수집된 제 의견서(제.개정 예고 대상인 사규의 경우 사규 제·개정 예고를 통하여 수집된 제 의견서 포함)를 첨부하여 사규관리부서에 제출한다. <개정 1996.03.19, 1997.06.12, 1999.03.12, 2003.02.04, 2012.07.03, 2013.08.09.. 2014.12.01. 2021.05.14>

- 3. 사규관리부서장은 사규의 체계, 형식 및 내용의 타당성 여부, 관계법령 및 다른 사규와의 관련성 등을 검토한 후 의견이 있을 때에는 검토의견을 붙여 사규운용부서장에게 회송한다. <개정 1997.06.12, 1999.03.12>
- 4. 사규운용부서장은 회송된 사규안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관리부서의 검토의견을 수용하여야 하며 다음의 확정절차를 거치도록 한다.
- 가. 이사회의 의결 : 관계법령·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한 규정 나. 사장 결재 : 기타의 규정, 세칙 및 요령<개정 1997.06.12, 1999.03.12 >
- 5. ( 삭 제 )<개정 1997.06.12>
- ② 사규의 개정이 관련 법령, 정부방침, 정관, 단체협약 및 상위사규의 변경과 관련하여 당연히 조정·변경을 요하는 경우 또는 자구수정 및 서식의 개폐 등 그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규운용부서 본부장의 결재를 득하여 이를 시행할 수 있다. 이때 중요 또는 경미한 사항의 판단은 사규관리부서장이 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.<개정 2003.02.04>
- 1. 중요한 사항
- 가. 이사회규정, 취업규칙, 직제규정, 위임전결규정, 인사규정, 보수규정 중 개정내용이 중 요한 사항
- 나. 회사조직, 기본체제, 주요방침 등의 변경 및 조정 사항
- 다. 급여, 인사, 복무기준 등 직원 신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
- 2. 경미한 사항
- 가. 법령의 제정 및 개폐와 관련하여 당연히 변경 또는 조정되는 사항
- 나. 조직개편과 관련한 명칭 및 업무절차의 변경 또는 조정 사항
- 다. 단순한 문안조정 및 기존업무의 수행기준에 큰 영향이 없는 세부사항의 변경 또는 조정 사항
- 라. 사장결재를 득하여 해당업무의 기본방침을 정한 사항으로서 이에 따른 세부사항의 변경 또는 조정 사항<신설 2003.02.04>
- 제18조의2 (입안예고) ① 사규운용부서장은 작성한 사규안을 사규관리부서에 제출하기 전 관련부서와의 협의진행과 동시에 사규관련 전산프로그램을 통하여 7일 이상의 의견수렴기간을 반드시거쳐야 하며, 수집된 제 의견은 협의를 거쳐 성실히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단, 급박한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사규의 개정이 관련 법령, 정부방침, 정관, 단체협약 및 상위사규의 변경과 관련하여 당연히 조정ㆍ변경을 요하는 경우 또는 자구수정 및 서식의 개폐 등 그 내용이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규관리부서장의 결정으로 입안예고를 생략할 수 있다.<개정 1999.03.12, 2003.02.04, 2014.04.15>
  - ② ( 삭 제 )<개정 1999.03.12, 2003.02.04>
  - ③ 사규운용부서장은 입안예고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반영여부, 미반영사유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<신설 2013.08.09 >
- 제18조의3 (제·개정 예고) ① 사규운용부서장은 국민의 생활과 권리,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의 사규 제·개정시 입안예고와 동시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·개정 주요내용, 신구조문대비

- 표, 사규안 전문, 의견제출방법 및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별지서식 제5호의 형식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 제·개정 예고하여야 하며 제·개정 예고 대상 사규는 사규관리부서장이 결정한다.<신설 2013.08.09>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규 제·개정 예고를 생략할 수 있고 생략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그 판단은 사규관리부서장의 결정에 따른다.<신설 2013.08.09>
- 1. 당해 사규를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비공개 대상으로 심의 · 의결한 경우
- 2.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상위법령이나 다른 규정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
- 3. 제 · 개정 예고가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
- ③ 제 · 개정 예고된 사규안에 대하여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<신설 2013.08.09 >
- ④ 사규운용부서장은 사규 제·개정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하고
- 그 처리결과 및 이유 등을 사규 제·개정 예고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견제출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.<신설 2013.08.09>
- **제19조(공포)** ① 사규운용부서장은 제18조 내지 제18조의3의 절차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최종 결 재문서 사본, 이사회의결서 사본 및 확정 사규안을 사규관리부서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.<개정 1999.03.12, 2003.02.04, 2013.08.09>
  - ② 사규관리부서장은 이송된 사규를 별지서식 제3호에 의한 사규관리대장에 등록한 후 공포한다.<개정 1999.03.12>
  - ③ 제2항의 공포는 사내 전산시스템으로 한다.<신설 2003.02.04.>

#### 제 5 장 효 력

- **제20조(효력)** ① 사규는 해당사규에서 정한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시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것은 공포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  - ② 법령·정부지시(예규·통첩에 한함) 및 정관에 저촉되는 사규의 조항은 그 부분에 한하여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.
  - ③ 사규 상호간의 효력은 규정·세칙·요령의 순에 의하며, 하위사규가 상위사규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.
  - ④ 동일 순위의 사규 중 서로 저촉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특별사규가 일반사규에 우선하며, 동일 특별사규나 일반사규 간에는 신사규가 구사규에 우선한다.

### 제 6 장 사규의 유지 및 관리

- 제21조(유지 및 관리) ① 사규관리부서장은 사규대장을 비치하고 사규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을 기록·유지하여야 한다.
  - ② 사규운용부서장은 사규의 제정 및 개폐 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제4장에서 정

하는 조치를 취하여 항상 실효성 있는 사규를 유지하여야 한다.

- 제22조(정비) ① 사규관리부서장은 수시로 사규를 검토하여 제정 및 개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규운용부서장에게 사규안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.
  - ② 사규운용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규 안을 작성하여야 한다.
- 제22조의2(직권개정)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규관리부서장은 규정의 내용이 불합리하거나 전체 사규체계의 합리적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협의 후 직접 개정조치 할 수 있다.<신설 2003.02.04>
- 제22조의3(사규운용부서의 지정) 사규의 운용이 복수의 부서에 걸쳐 있는 경우 및 사규의 입안부 서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규관리부서의 본부장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주운 용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.<신설 2003.02.04>
  - 1. 해당문서 담당부서
  - 2. 총칙에 해당하는 부서
  - 3. 본칙에 해당하는 부서
  - 4. 직제규정에 의한 부서의 순
- 제23조(사규집 편찬 및 관리) ① 사규관리부서장은 제정 또는 개폐되는 사규를 사내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항상 최신의 상태로 유지·관리하여야 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에는 사규집을 발간하여 병행 관리 할 수 있다.<개정 1999.03.12, 2003.02.04, 2007.03.23>
  - ② 사규관리부서장 및 각 부서의 장은 사규집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.<개정 2003.02.04>
  - ③ 사규집은 사규관리부서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사외로 반출하지 못한다.<개정 1996.03.19, 1999.03.12>
- 제24조(지침 등의 제정) ① 사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한정적, 부분적 업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침 또는 내칙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
  - ② 이 규정에서 지침이라 함은 본부를 달리하는 부서 및 사업소 또는 전사적으로 공통 적용되는 사항에 대하여 정해놓은 규범을 말하며, 내칙이라 함은 당해 본부, 부서 및 사업소에 국한하여 적용되는 사항을 정해놓은 규범을 말한다.<개정 2003.02.04>
  - ③ 지침의 제정 및 개폐절차는 사규의 제정 및 개폐절차를 준용한다<개정 2003.02.04, 2014.04.15>
- 제25조(해석) ① 사규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사규운용부서장의 해석에 따른다. 다만, 이에 대하여 관련부서장의 이의가 있는 경우 또는 해석이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규관 리부서장의 해석에 따른다.
  - ② 제1항의 경우 사규관리부서장은 사규해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예규로 정하여 시달할 수 있다.
  - ③ 사규해석에 관한 이의는 문서로 제기하여야 하며, 이의가 제기된 경우 사규운용부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의제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석의 주요내용 및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이의제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<신설 2013.08.09>

#### 제 7 장 사규의 공개 <본장 신설 2012.07.03>

- 제26조(사규 공개 목적) 사규에 대한 공개 대상 및 범위 등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참여를 통해 공사가 수행하는 업무 처리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7조(공개의 대상 및 범위) 사규 공개 대상 및 범위는 정보공개운영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 제28조(비공개대상 사규)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심의·의결한 사규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<개정 2013.08.09>
  - 1. 경영·영업상 비밀에 관한 규정으로 공개될 경우 공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규
  - 2. 감독·검사·심사·평가 등의 관련 규정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사규
  - 3. 보안에 관한 규정으로 공개될 경우 공사의 보안상 비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규
  - 4. 기타 정보공개심의회에서 공개하지 않기로 심의 의결한 사규
- 제29조(부분공개대상 사규) 제2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규정과 공개가 가능한 규정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28조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다.
- 제30조(공개대상 사규의 관리) 사규관리부서와 홈페이지 관리부서는 홈페이지에 공개된 사규에 대하여 일반국민이 사규를 원활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.
- **제31조(보칙)** ① ( 삭 제 )<개정 2003.02.04>
  - ② ( 삭 제 )<개정 1996.03.19, 2003.02.04>

#### 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3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
  - 1.이 규정 시행이전에 제정된 모든 사규는 이 규정의 소정 절차를 거쳐 확정되어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.
  - 2. 이 규정 시행이전에 제정된 모든 사규는 제2항의 경과조치에 따르고, 이 규정의 시행일은 사장 결재일로부터 그 효력을 갖는다.

#### 부 칙

이 규정은 1993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이 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힌	난다. <b>부 칙</b>
이 규정은 1997년 6월 12일부터 시행	•
이 규정은 1999년 3월 12일부터 시행	<b>부 칙</b> 한다.
이 규정은 2007년 2월 4일부터 시행힌	<b>부 칙</b> 난다.
이 규정은 2007년 3월 23일부터 시행	<b>부 칙</b> 한다.
이 규정은 2012년 7월 3일부터 시행한	<b>부 칙</b> 난다.
이 규정은 2013년 8월 19일부터 시행	<b>부 칙</b> 한다.
이 규정은 2014년 4월 15일부터 시행	<b>부 칙</b> 한다.
이 규정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	<b>부 칙</b> 한다.
이 규정은 2021년 05월 14일부터 시형	<b>부 칙</b> 당한다.

## 【별지서식 제1호】

# ○○○○○ 개정(제정, 폐지)안

(사규명)

제 안 일 : 제안부서 :

1. 개정(제정, 폐지) 이유

2. 주요 개정(제정, 폐지) 내용

#### 【별지서식 제2호】

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(안)	개정사유

- ※ 1. 개정조문 전문을 기입하고 현행과 개정(안)의 상이한 부분은 모두 밑줄을 긋는다.
  - 2. 변경되지않는 조·항·호의 경우 현행란은 "(생략)"으로 개정(안)란은 "(현행과 같음)"으로 하고 "(생략)"으로 표시되지 않는 부분은 현행란에 모두 기술하되 개정(안)란에서는 "-----"와 같은 선을 섞어 표시할 수 있다.
  - 3. 신설 또는 삭제되는 조항의 경우 현행란에 "(신설)" 또는 개정(안)란에 "(삭제)"로 표시한다.
  - 4. 개정사유란에는 개정조항별로 개정사유를 명기한다.

## 【별지서식 제3호】

# 사규관리대장

사규명			
운용부서			
제정일			
개정일	시행일	н	고

【별지서식 제4호】< 신설 2012.07.03., 2021.05.14>

※관리번호	사규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(표지)				
법령(등) 명	평가하고자 하는 사규의「상위법령」이 있는 경우만 기재				
구 분	□ 제정		□ 개정		□ 현행
형 식	□ 정관		□ 규정		□ 시행세칙
관련 내부규정 명 (정관, 규정, 시행세칙 등)					
		부서명			
	사규운용부서	담당자	직성명		
			전화번호		
소관기관 및 부서	평기담당부서	부서명			
		담당자	직성명		
			전화번호		
	관련부서 협의	대상부서			
제·개정 일정 (예정)		협의기간	20	.부터	20까지( 일간)
	완료예정일	20			
의견수렴절차	입안예고 등	일안예고 등			
별도 붙임자료	1. 제·개정(안)(신·구 조문 비교표 포함) 2. 부패영향평가 체크리스트 및 관련자료				

-1 )] -1	부서명	직급	성명	전화번호
작성자				

붙임 : 부패영향평가 체크리스트. 1부.

<붙임1>

# **부패영향평가 체크리스트**(사규운용부서 자가진단 및 감사실 평가용)

□ 규정명 :

떠기버사	전 기 첫 P	사	규운용부서 자가진단	감사실 평가		
평가분야	평가항목	평가결과	관련조항 및 의뢰부서 의견	평가결과	관련조항 및 감사실 의견	
준수	1. 준수 부담의 합리성	□ 합리적 □ 비합리적		□ 합리적 □ 비합리적		
	2. 제재 규정의 적정성	<ul><li>□ 적당</li><li>□ 높음(과도)</li><li>□ 낮음(미약)</li></ul>		<ul><li>□ 적당</li><li>□ 높음(과도)</li><li>□ 낮음(미약)</li></ul>		
	3. 특혜 발생 가능성	<ul><li>□ 있음</li><li>□ 없음</li></ul>		□ 있음 □ 없음		
	4. 재량규정의 구체성·객관성	□ 구체적·객관적 (통제장치 포함) □ 추상적·주관적 (통제장치 포함)		□ 구체적·객관적 (통제장치 포함) □ 추상적·주관적 (통제장치 포함)		
집행	5. 위탁·대행의 투명성·책임성	□ 적정   □ 부적정		□ 적정 □ 부적정		
	6. 재정 누수 가능성	<ul><li>□ 적정</li><li>□ 부적정</li></ul>		<ul><li>□ 적정</li><li>□ 부적정</li></ul>		
	7. 접근의 용이성	<ul><li>□ 있음</li><li>□ 없음</li></ul>		<ul><li>□ 있음</li><li>□ 없음</li></ul>		
행정절차	8. 공개성	<ul><li>□ 공개</li><li>□ 비공개</li></ul>		□ 공개 □ 비공개	_	
	9. 예측 가능성	<ul><li>□ 있음</li><li>□ 없음</li></ul>		<ul><li>□ 있음</li><li>□ 없음</li></ul>		
	10. 이해충돌 가능성	<ul><li>□ 있음</li><li>□ 없음</li></ul>		<ul><li>□ 있음</li><li>□ 없음</li></ul>		
부패통제	11. 부패 방지 장치 체계성	<ul><li>□ 필요</li><li>□ 불필요</li></ul>		<ul><li>□ 필요</li><li>□ 불필요</li></ul>		
	12. 소극행정 유발가능성	<ul><li>□ 있음</li><li>□ 없음</li></ul>		<ul><li>□ 있음</li><li>□ 없음</li></ul>		

※ 작성방법 : <붙임2> '부패영향평가 평가기준'에 따라 작성

# 부패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작성을 위한 평가기준

평가분야	평가항목
준수	1. 【준수 부담의 합리성】 규정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, 기업, 단체 등 내부규정 적용대상 집단이 부담하는 비용·희생이 합리적 수준입니까? ① 합리적 ② 비합리적
	2.【제재 규정의 적정성】 내부규정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정도가 과도하거나 미약하여 부패를 유발할 요인이 있습니까? ① 적당 ② 높음(과도) ③ 낮음(미약)
	3.【특혜 발생 가능성】 내부규정 등으로 인해 특혜 발생의 가능성이 있는지, 특혜를 통제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까? ① 있음 ② 없음
	4.【재량 규정의 구체성·객관성】 재량권자, 재량범위·기준·행사 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규정에 구체적·객관적으로 명시되어 있고,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까? ① 구체적·객관적(통제장치 포함) ② 추상적·주관적(통제장치 포함)
집행	5.【위탁·대행의 투명성·책임성】 행정권한·사무의 위탁·대행 등에 관하여 개별 법령에 근거, 요건, 절차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, 책임성 확보를 위한 관리·감독 장치가 적정하게 마련되어 있습니까? ① 적정 ② 부적정
	6.【재정 누수 가능성】 예산·기금으로 재정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, 중복 지원 또는 지원 기준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재정누수 가능성 여부 및 이를 방지하기 위한 통제수단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까? ① 적정 ② 부적정
행정절차	7. 【접근의 용이성】 정책 결정 과정 및 이의제기 과정 등 각종 행정절차에서 국민, 기업, 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관계전문가의 참여제도 또는 의견진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습니까? ① 있음 ② 없음
	8. 【공개성】 평가대상 업무의 내용 및 처리 절차와 관련하여 양질의 정보가 이해관계자, 일반 국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되고 있습니까? ① 공개 ② 비공개
	9. 【예측 가능성】 내부규정이 업무처리의 과정 및 결과를 누구나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필요한 경우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까? ① 있음 ② 없음
	10.【이해충돌 가능성】 공적인 업무 추진과정에 사적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 수단이 마련되어 있습니까? ① 있음 ② 없음
부패통제	11. 【부패 방지 장치의 체계성】 당해 규정이나 정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통제장치의 도입이나 부패 방지 법령 등의 적용이 필요합니까? ① 필요 ② 불필요
	12. 【소극행정 유발 가능성】 규정상 근거 부재 등이 임직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이어져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(공사)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할 가능성은 없습니까? ① 있음 ② 없음

# 000규정 제ㆍ개정 예고

00011 8 741 711 8 1122
1. 규정 명칭
2. 제·개정 이유
3. 주요 제·개정 내용
가.
나.
다.
※ 조문별로 제·개정 되는 주요 내용을 기술
4. 의견제출
이 제·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0월 0일까지(도착기준)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000기관 000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
나. 제출자의 성명, 주소 및 전화번호, 이메일 주소
<보내실 곳>.
○ 전화 :
○ 팩스 :
○ 이메일 :
○ 주소 : (기관명과 부서명까지 기재)

방만경영 사전영향평가 의뢰서					
제도명 (문서명)	평가하고자 하는 사규의 「상위법령」이 있는 경우만 기재				
구 분	□ 제정(수립) □ 개정(변경)			□ 개정(변경)	
형 식	□ 정관 □ 규정 □ 세칙(요령) □ 지침 □ 기준 □ 기본계획				
관련규정, 법령 및 정부지침					
	부서명				
소관부서	담당자	직 · 성명			
		연락처			
추진일정	관련부서 협의	협의기간	20	.부터 20까지( 일간)	
	완료예정일	20			
첨부자료					

○ ○ ○ ○ 처(실·센터)장